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교통정온화 시설의 제도적 확산방안 마련 연구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2022. 10.

담당	부 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도로국	사무관	허원석	044-201-3912	201-5591
	도로관리과	주무관	가필순	044-201-3920	201-5591

I. 과업지시서	1
1. 과업의 개요	1
2. 과업의 내용	3
3. 과업수행지침	4
4. 예정공정표	13

II. 제안요청내용	14
------------	----

III. 제안서 일반사항	15
1. 입찰참가자격	15
2. 사업자 선정방식	16
3. 평가 및 협상기준	16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17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8
6. 제안서 설명	19

[별지 서식]	20~32
---------	-------

I.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교통정온화 시설의 제도적 확산방안 마련 연구

나. 과업의 배경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차량속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운영 중(19.2~)
- * 지그재그도로, 회전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 등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물리적 시설
- 또한, 교통정온화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과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지자체 대상으로 ‘안심도로 공모전’도 매년 개최(20년~)
- * 우리부·행안부·경찰청 합동 개최, 아이디어/ 설계·계획/ 운영우수 등 3개 부문 공모
- 이후 본격적으로 교통정온화 시설이 현장에 적용되고는 있으나 확산 현황이나 사고 저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은 부재
- 이에, 도로 교통정온화 시설의 설치현황·계획을 조사·분석하고, 교통정온화시설 확산을 위한 제도 및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대상구간(각종 보호구역·보행환경개선사업* 중심)
- * 어린이·노인장애인·마을주민 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보행우선구역, 사고찾은곳 개선사업, 안전 5030사업 등

2) 시간적 범위

- 분석 기준년도 : 2022년

3) 내용적 범위

- 교통정온화 시설 현황조사
-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교통정온화 시설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홍보 개선방안 연구

라. 과업 기간

-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전체 10개월**(300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예 산

- 연구비 : 100,000,000원

[예산과목 :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일반연구비) (1739-301-260-0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가. 교통정온화 시설 현황조사

- 국내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계획현황 조사
- 지자체별, 시설종류별, 도로등급별로 적용 현황 분류
- 안심도로 공모전 수상작 현장 적용현황 조사

나.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사업진행절차, 적용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과정에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애로사항, 제도적 제약문제 등 문제점 도출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효과 검토 및 분석

다. 교통정온화 시설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필요사항 검토·발굴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현황 관리를 위한 DB 구축방안 제안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제안
- 도시계획 단계에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을 제고방안 제안

라.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홍보 개선방안 연구

- 이전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결과 분석 및 시사점·보완사항 도출
-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효과적 홍보 방안 검토 및 제안

- 3 -

3.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본 과업지시서에서 국토교통부를 “갑”, 용역사를 “을”이라 칭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협의 및 의견수렴 등

-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학계, 연구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에 반영한다.
- “을”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기준

-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상호협의를 의하여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4 -

-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수행자가 “갑”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용역기관의 의무

- “을”은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갑”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 “을”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을”은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을”은 “갑”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5 -

- 6 -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원도),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을”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을”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발주기관에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6조를 준용한다.

- 7 -

11) 기타사항

- “을”은 과업진행에 대한 “갑”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갑”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 고

- 1) “을”은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제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연구방향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 2) “을”은 매월 말 기준 과업추진실적(공정)과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8 -

- 3) “을”은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정리·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4)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5) “을”은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갑”의 제검토 또는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6) “을”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3부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3부	
최종보고서	과업 준공 시	20부	
CD 1식(최종)	과업 준공 시	3EA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 소요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라. 보안사항

- 1) “을”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 2017.07.13.)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9 -

- 10 -

-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을”의 과업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4) “을”은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을”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갑”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6)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8)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9)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10)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11)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12)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906호, 2017. 07.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 교통정온화 시설 현황 조사(20%)		10	10								
2.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20%)				10	10						
3. 교통정온화 시설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30%)						8	8	5	5	4	
4.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홍보 개선방안 연구(30%)								7	7	7	9
■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과업진도율	월별	10	10	10	10	8	8	12	12	11	9
	누계	10	20	30	40	48	56	68	80	91	100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와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II. 제안요청내용 (주요 과업)

1. 교통정온화 시설 현황조사

- 국내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계획현황 조사
- 지자체별, 시설종류별, 도로등급별로 적용 현황 분류
- 안심도로 공모전 수상작 현장 적용현황 조사

2.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사업진행절차, 적용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과정에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애로사항, 제도적 제약문제 등 문제점 도출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효과 검토 및 분석

3. 교통정온화 시설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필요사항 검토·발굴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현황 관리를 위한 DB 구축방안 제안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 제안
- 도시계획 단계에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률 제고방안 제안

4. 교통정온화 시설 확산·홍보 개선방안 연구

- 이전 안심도로 공모전 개최결과 분석 및 시사점·보완사항 도출
-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효과적 홍보 방안 검토 및 제안

Ⅲ. 제안서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입찰공고문에 따름)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15 -

- 가격협상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모든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 할 수 있음

4. 제안서 서식 및 작성요령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가능)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붙임 2 서식 참조)에 따라 A4용지, 50쪽 이내로 하고, 제안요약서는 단면 1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 50매 이내로 작성하며, 가로쓰기함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 표를 제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17 -

2.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 평가(80%) + 입찰가격 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에 따라 가격 협상
-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

3. 평가 및 협상기준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본 영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별첨1)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공과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통지 함

나. 협상방법

- 16 -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유의사항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다. 제출장소 및 기한

- 18 -

- 제출처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6. 제안서 설명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필요시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설명은 PPT를 작성하여 하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로 함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신하며,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함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10)	기관평가 (인력·조직)	■ 연구인력 보유수	10	계량평가
과업수행부 (90)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평가
	과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의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비계량평가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방법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평가
	투입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	20	비계량평가
	기 타	■ 제도적 확산 및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0	비계량평가
합 계			100	

□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기관평가(10점)

구 분	연구인력 보유수				
	10인 이상	8인 이상 10인 미만	6인 이상 8인 미만	4인 이상 6인 미만	4인 미만
점 수	10	9	8	7	6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도로, 교통 관련) 석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연구인력 보유수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제안서 개요	10	10	9	8	7	6
과업 접근방법	30	30	27	24	21	18
수행계획	20	20	18	16	14	12
투입인력 평가	20	20	18	16	14	12
기 타	10	10	9	8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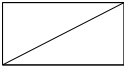
* 매우 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다소 미흡(배점의 70%), 미흡(배점의 60%)

* 투입인력 평가는 도로,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비계량 평가

<별첨>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목표 3.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방법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 현황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재무현황 등 제시	서식 - 3
Ⅲ. 사업 수행부문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계획	-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과업 추진전략 등 기술 - 과업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 연구결과와 기대성과 및 향후 활용방안 기술 -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 4 서식 - 5
Ⅵ. 기타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양식 모음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 서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 서식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연구진 이력사항

과업제안서

용역명 : 교통정온화 시설의 제도적 확산방안 마련 연구

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요약)			
8. 예산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9. 상시 종업원 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3]

관련 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주) 1. 【서식 4】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 하겠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보안서약서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교통정온화 시설의 제도적 확산방안 마련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